

## (변경대비표)

정정사유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(19.9.16.)에 따른 정정사항 및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(2020.04.) 반영

정정사항 :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-	-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,③ (생략)</p> <p>④ &lt;신 설&gt;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②,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<u>1. 보상 금액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</u></p> <p><u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</u></p>

	<p>⑤ &lt;신 설&gt;</p>	<p>개월간. 단, 남은  <u>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 기간으로 한다.</u>  3. 지급방법: 집합투자업자의 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</p> <p>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 <u>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(법  190 조제 3 항에 따른 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있다.</u>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	--